충청북도의회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

심 사 보 고

1. 심사경과

가. 발의자 : 이범윤의원외 6인

나 제출일자 및 회부일자

○ 제출일자 : 2004년 10월 13일

○ 회부일자 : 2004년 10월 14일

다. 상정일자 : 제232회 임시회

○ 2004년 10월 26일,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,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, 심의의결

2. 제안설명 요지

(제안설명자 : 이범윤의원)

가. 제안이유

○ 사무관리규정이 개정(2002.12.26)되었음에도 정비되지 않은 문서심사관제에 대한 관련 조문을 개정하고자 함

나. 주요골자

○ 사무관리규정의 개정으로 문서심사관제가 폐지됨에 따라 이와 관련된 조례내용중 일부 내용을 삭제

3. 검토보고 요지

(의회운영위원회 전문위원 김승진)

○ 충청북도의회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을 검토한 바, 상위법령인 사무관리규정에서 전자문서의 경우 문서심사관제가 폐지되어 개정하는 것이므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"생략"

5. 토 론 요 지 : "생략"

6. 심 사 결 과 : 원안가결

7. 소수의견 요지 : "없음"

8. 기타 필요한 사항 : "없음"

9. 심사보고서 첨부서류

○ 충청북도의회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

충청북도의회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246

발의연월일 : 2004년 10월13일
발 의 자 : 이범윤의원외 6인

□ 제안이유

○ 사무관리규정이 개정(2002.12.26)되었음에도 정비되지 않은 문서심사관제에 대한 관련 조문을 개정하고자 함

□ 주요내용

○ 사무관리규정의 개정으로 문서심사관제가 폐지됨에 따라 이와 관련된 조례내용중 일부 내용을 삭제

□ 참고사항

○ 신·구 조문 대비표 : 따로붙임

충청북도의회 조례 제 호

충청북도의회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

충청북도의회공인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6조제1항 단서중 "처리과의 문서심사관이 문서심사 후"를 삭 제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6조(공인의 날인)①공인은 관수자가 문서의 시행문과 상장 및 각종 증명서 등에 속하는 문서에 날인하되, 결재문서와 일치 여·부 등을 대조 심사후 날인하여야 한다. 다만, 전자문서의 경우에는 **처리과의 문서심사관이 문서심사후** 전자이미지관인으로 날인함을 원칙으로 한다.	제6조(회의)①·····. 다만, 전자문서의 경우에는 전자이미지관인으로 날인함을 원칙으로 한다..